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9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김선교·김예지·우재준

김성원 • 구자근 • 김석기

김상훈 · 송석준 · 이헌승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8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8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8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따라 등록신청을 받아"를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나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의 배제) ① (생 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3)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4조에 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 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 하지 아니하다. 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 설>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⑤ • ⑥ (생 략)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 ⑦(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